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2월 6일
- 회부일자 : 2006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기업인 예우 확대와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의 지원 근거를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13조)
- 기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업인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기업의 애로해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기업애로 지원협의회”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 기업애로지원센터 내에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과

자문위원회의 운영근거를 정함(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6년도 5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의 발의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확산하여 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애로 해소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날 지정, 기업애로센터 설치 및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제도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안 제15조의 충청북도 기업애로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에서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으로 규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위원 위촉에 있어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실제 애로를 겪는 기업인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7조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은 기업 관련 행정·민원의 양적증가와 질적 다양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업고충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처리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확산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하는 바,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 수립과 행정규칙으로 규정 되어 있는 「충청북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중복 민원에 대한 향후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 안 제18조 기업애로지원 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은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관한 보편적 규정은 ①목적규정(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근거법령을 명시) ②설치 및 기능 ③구성 및 위원(임원, 위원정수, 위원자격, 선임절차 등)
④위원장(직무, 대행자 등) ⑤운영규정(회의종류, 소집시기, 소집요건, 정족수 등) ⑥수당지급 등 행정지원 ⑦규칙 또는 운영세칙으로의 위임 등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의 표준 방식임을 감안할 때 일부조항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설명 및 자문위원회와 기업애로 지원협의회에 대한 기능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 다만, 본 조례는 안 할 때 좋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 기 살리기 및 기업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47조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부를 육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 제2항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생략”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